

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

의안 번호	3-212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03. 12. 20.

제출자 : 파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4회일반
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
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2003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
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394,397,407천원임.
-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
사업 14억원을 2004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것임